

# 고등교육관련 입법동향

## 1. 국립대학 회계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 2015.03.13.]

[법률 제13217호, 2015.03.13. 제정]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국립대 회계재정법)이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3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감.

국립대 회계재정법은 대학회계 설치, 재정위원회에 학교구성원 참여 보장, 예·결산 공개 의무화, 기성회 직원의 고용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국립대 회계재정법의 시행으로 일반회계(국고)와 기성회계(기성회비)로 구분된 대학재정이 ‘대학회계’로 통합됨. 그동안 국·공립대 회계구조는 국고인 일반회계와 비국고인 기성회회계, 산학협력단회계,

대학발전기금회계 등 크게 4종류로 구분되었으나, 앞으로는 일반회계와 기성회회계 대신 대학회계가 설치되고 학교 구성원과 외부 전문가로 꾸려진 재정 위원회가 재정운영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됨.

### 국립대 회계재정법의 주요 내용

가. 이 법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공립대학에 대하여 준용함(제2조제2항).

나. 국가는 국립대학의 교육·연구 및 교육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국립대학에 대한 지원금의 총액을 매년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함(제4조).

다. 재정위원회의 일반직위원에 해당 대학의 교원, 직원, 재학생을 각각 2명 이상 포함하도록 함(제8조제3항).

- 라. 국립대학에 국가 지원금과 대학의 자체수입금을 통합·운영하는 대학회계를 설치하고, 국립대학의 장은 대학회계를 운영함에 있어 재정건전성의 확보, 학생·학부모 부담의 최소화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함(제11조 및 제12조).
- 마. 국립대학의 장은 소속 교직원에 대하여 대학회계의 재원으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등을 위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음(제28조제1항).
- 바. 국립대학의 장은 종전의 기성회 직원을 이 법에 따라 대학회계가 설치된 때에 대학회계직원으로 신규 채용하고, 보수·복무 등의 근로조건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함(부칙 제4조).
- 사. 법률 제12174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에 같은 법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의 2015학년도 등록금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1조 제7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함(부칙 제5조).

**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의안번호: 15034  
제안연월일: 2015.5.6.  
제안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장

대학 휴학 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단기 소득이 발생할 경우 학자금 대출 상황이 자동으로 개시되던 현행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의 문제점을 개선한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015.5.29.).

이번 개정안은 현행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취업 후 상환학자금에 상환의무가 있는 채무자가 졸업 전 일정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졸업 여부와 상관없이 의무상환이 개시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졸업 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상환을 유예하는 규정을 신설함.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을 대출 받은 채무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종합소득, 양도소득 또는 상속·증여재산 소득이 발생한 경우 신고납부방식에 따르던 학자금 상환을 고지납부방식으로 변경하며, 원천공제금액 등을 통지받은 채무자가 원천공제 대신 일괄납부를 선택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개정안의 주요내용**

- 가.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 나. 채무자가 졸업 전에 발생한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의무상환을 유예함.
- 다. 채무자가 장기미상환자이거나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뿐만 아니라,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에 따라 상환할 수 있도록 함.
- 라. 채무자의 국외이주신고 및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
- 마. 종합소득, 양도소득, 상속·증여재산소득에 대하여 의무상환액 상환방식을 신고납부에서 고지납부로 변경하고 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및 연금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원천공제금액을 종합소득에서 차감하여 고지하며, 중간납부제도를 폐지.
- 바. 근로소득 또는 연금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원천공제 개시 전에 원천공제금액 전부 또는 2분의 1

## 입법동향

씩 나누어 납부하거나 원천공제 개시 이후에도 원천공제금액 중 남은 금액을 일괄납부.

### 3. 교육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교육부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5년 3월 13일부터 공포·시행됨에 따라, 2015학년도 1학기부터 모든 국·공립대학에 도입되는 '대학회계' 제도가 현장에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함.

이번에 입법예고한 제정안은 법률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대학회계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제정안의 주요 내용

- 가. 대학의 장은 재정위원회 회의록을 회의일로부터 10일 내에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토록하여 학교 구성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함.
- 나. 대학의 장은 해당 대학의 '대학회계' 운영을 위해 재정·회계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학교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하여 학교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함.
- 다. 기성회계에서 교직원에게 지급되던 월정액 방식의 급여보조성 연구비는 폐지되며, 교원에게 교육, 연구, 학생지도 등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하도록 의무화하여 국립대학의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제고함.

라.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사항, 수입 및 지출의 원칙, 재무보고서 및 재무제표의 내용 및 작성 방식, 장부와 서식 등 국립대학이 복식부기로 '대학회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들도 포함.

마. 대학의 장은 대학회계 직원을 운영함에 있어 대학의 재정 여건과 업무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적정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대학회계 직원의 총 정원에 관한 사항을 재정위원회 의결을 얻도록 하는 등 인력 관리 방안을 마련함.

### 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등교육 기회균등)

의안번호: 14464

발의연월일: 2015.3.27.

발의자: 김종태 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대통령령은 농어촌 지역의 학생과 저소득계층에게 특별전형의 기회를 부여하며, 이에 따른 대상지역 및 선발인원은 대학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대학의 장이 정하는 농어촌 지역의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지역으로 제한되어, 동 지역은 농림·축산·어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다수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특별전형의 기회가 제공되지 않고 있음.

또한 학생선발을 대학 자율에 맡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선발이 유명무실

해진 상태임.

이에 개정법률안은 동법 제33조의2(고등교육의 기회균등)를 신설하여 농어촌 지역의 범위를 농림·축산·어업에 종사하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여 동 지역까지 포함하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특별전형 선발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고등교육법 제33조의2(고등교육의 기회균등) 신설**

제33조의2(고등교육의 기회균등) ① 대학의 장은 소득·지역 등의 차이로 인해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는 자 중 농어촌 지역의 학생(농·임·축산·어업에 종사하는 인구수가 시 전체 인구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 동 지역을 포함한 시 전체를 농어촌 지역으로 간주), 도서·벽지 지역의 학생,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학생은 고등교육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특별전형에 의하여 선발할 수 있음.

**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등교육 기회균등)**

의안번호: 14465

발의연월일: 2015.3.27.

발의자: 박홍근 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이어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일부 과목의 출제 오류로 인한 수험생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학수

학능력시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대학수학능력시험시행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학수학능력시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업무 범위 및 수험생의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고등교육법 제34조의6을 신설함.

☞ **고등교육법 제34조의6(대학수학능력시험시행 기본계획의 공표 등) 신설**

- 교육부장관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 배점, 성적통지 및 시험일정 등을 포함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시행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공표.
- 교육부장관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공고, 출제·채점 및 성적통지 등에 관한 사항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음.
-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제 및 정답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의안번호: 14799

발의연월일: 2015.4.20.

발의자: 홍의락 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입학에 있어 계층 간 소득격차와 사교육 영

향으로 도시와 농어촌, 서울과 지방, 서울 내 지역 간의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서울의 주요 대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중 지방출신 비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음. 이에 서울소재 대학 중 연간 입학 총인원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지역균형선발 제도를 도입하여 지방 학생도 서울 학생과 동일 선상에서 경쟁할 기회를 확대하고, 서울과 지방 간 교육격차 해소와 대학의 공공성 및 사회책임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 고등교육법 제34조의6(대학수학능력시험시행 기본계획의 공표 등) 신설

- 지방 학생도 서울 학생과 동일 선상에서 경쟁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서울 소재 대학에 대하여 지역특별전형인재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는 지역균형선발 제도를 도입할 수 있게 함(안 제34조의6제1항).
- 지역균형선발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지역특별전형인재 모집비율이 일정비율 이하인 서울 소재 대학의 장에게 지역특별전형인재를 일정비율 이상 모집을 권고할 수 있게 함(안 제34조의6제2항).
- 지역특별전형인재 모집이 원활한 대학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6제3항).

## 7.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의안번호: 15373

발의연월일: 2015.6.1.

발의자: 유은혜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사학연금의 경우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도록 하되, 부담금의 부족액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교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경영기관은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외에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 국민연금 법인부담금의 경우에도 학교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함에 따라 학교회계의 재정악화와 등록금 인상을 초래하고 있음.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는 법인부담금은 원칙적으로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도록 하되, 학교경영기관이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교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인부담금의 무분별한 학교 부담을 줄여 학교회계의 부실을 방지하고 학교경영기관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규정을 신설(안 제29조 제7항부터 제9항).